

# WTO, 최빈국에 대한 TRIPS협정 추가 유예결정

작성자 : 이성희 (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)

작성일 : 2013년 6월 28일

## ■ 세계무역기구(WTO)는 지난 6월 11일 최빈국(LDCs)<sup>1)</sup>에 대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(TRIPS)협정<sup>2)</sup> 유예기간<sup>3)</sup>을 2021년 7월 1일로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발표함.

- 이번 조치로 오는 2013년 7월 1일 만료예정이던 34개 최빈국에 대한 TRIPS협정 유예기간이 8년 연장됨.
  - o WTO는 1995년 TRIPS협정 제정 당시 최빈국에게 10년간의 유예기간을 보장하는 한편 최빈국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선진국과의 기술·재정협력을 강조함(TRIPS 협정 제 66조, 67조).
  - o 그러나 WTO는 2001년 도하선언<sup>4)</sup> 직후 최빈국의 제약부문에 대한 TRIPS 유예기간을 2016년 1월로 연장했고 2005년에는 최빈국의 요청에 따라 제약 외 전 부문에 대한 유예기간을 2013년 7월로 연장한 바 있음.

표 1. 최빈국 TRIPS 이행 유예기간 연장현황

1995년 TRIPS 제정당시	전 부문: 2006.1.1까지
2002년 도하선언(2001) 직후	제약부문: 2016.1.1까지
2005년 11월	제약부문제외: 2013.7.1까지
2013년 6월	제약부문제외: 2021.7.1까지

주: 제약 외 부문은 소프트웨어, 출판영상물, 농산품 등이 포함됨.

자료: WTO, ICTSD

표 2. WTO에 가입된 최빈국 현황 (총 34개 국)

<b>아프리카(25개 국)</b> 앙골라, 베냉, 부르키나파소, 부룬디, 중앙아프리카공화국, 차드, 콩고, 지부티, 감비아, 기니, 기니비사우, 레소토, 마다가스카르, 말라위, 말리, 모리타니, 모잠비크, 니제르, 르완다, 세네갈, 시에라리온, 탄자니아, 토고, 우간다, 잠비아
<b>아시아(8개 국)</b> 방글라데시, 캄보디아, 라오스, 미얀마, 네팔, 사모아, 솔로몬제도, 바누아투
<b>남미/카리브 해(1개 국)</b> 아이티

자료: WTO, UN

## ■ 이번 추가유예 결정과 관련, 선진국과 개발도상국·최빈국 진영은 △추가 유예기간의 길이 △역행금지조항(no-rollback clause)<sup>5)</sup> 포함여부 등에 대해 의견차를 보임.

- 1) UN은 1인당 국민총소득(3년 평균 750달러 이하), 인적자본수준(영양, 문맹률 등), 경제적 취약성 등을 근거로 최빈국을 분류함. 현재 최빈국으로 분류된 국가는 총 49개국이며 이 중 34개국이 WTO 회원국임.
- 2) 무역관련 지적재산권(Trade-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)협정: 1995년 WTO의 출범과 함께 타결된 협정으로 저작권,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의 보호기준과 시행절차에 대한 다자간 조약임.
- 3) TRIPS 유예기간이 주어졌다고 해서 TRIPS 협정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것이 아님. 최빈국은 TRIPS 유예기간 동안 상표, 특허, 지리적 표시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선택적으로 취할 수 있음.
- 4) 2001년 제4차 도하 WTO각료회의에서 채택된 'TRIPS 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선언'은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해 공중보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제약사의 특허권 보호보다 중요하다는 개도국의 입장을 강조함.
- 5) 역행금지조항(no-rollback clause)이란 '최빈국이 TRIPS 이행 유예기간동안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일정한

- 개발도상국·최빈국은 TRIPS 이행연기가 지적재산권 보호에 필요한 경제적, 제도적, 기술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최빈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함.
  - o 당초 최빈국 진영은 2012년 11월 WTO에 제출한 의견을 통해 최빈국이 경제성장을 통해 최빈국 지위에서 벗어날 때까지 TRIPS 이행의무를 무기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함.
  - o 또한 최빈국의 정책적 선택의 폭을 제한하는 역행금지조항의 삭제를 요구함.
- 반면 선진국은 한시적이고 단기적인 유예기간을 통해 최빈국의 TRIPS 이행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함.
  - o 미국 등 선진국은 일부 최빈국이 이미 지적재산권 보호법과 제도를 마련하기 시작했고 WTO의 2005년 결정에 역행금지조항이 포함됐던 만큼 장기적인 추가 유예기간은 불필요하다고 평가함.

**■ 향후 최빈국은 지적재산권 보호와 연구개발에 필요한 역량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TRIPS협정 유예기간에 대한 추가연장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됨.**

- 특히 AIDS 등 질병퇴치를 위해 의약품의 접근성 개선을 강조하는 최빈국이 2016년 1월 만료예정인 제약부문에 대한 TRIPS 유예기간 추가연장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아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 보호를 주장하는 미국, 유럽 등과의 갈등이 예상됨.
- 최빈국의 TRIPS협정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선진국-최빈국 간 경제·기술 협력 확대 및 최빈국 내부에서 경제, 산업, 기술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노력이 요구됨.

〈자료: WTO, ICTSD, IP Watch 및 국내외 언론사 참조〉

---

조치를 취했다가 다시 그 조치의 수위를 낮춰서는 안 된다'는 조항으로 WTO는 2005년 유예결정 당시 역행금지 조항을 포함했으나 이번 추가유예 발표에서는 역행금지조항을 삭제함.